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4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사회적 경제조직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9.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행정9급 차지효 (연락처 02-2286-6610)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9. 2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9. 27.

다. 상정일자: 2018. 10. 23.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우리구 사회적 경제조직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9.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하여,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 지원을 실현코자 하는 기금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상위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